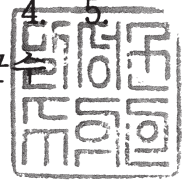


#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변경 보고의 건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3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21. 4. 5.  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## 1. 보고이유

- 기존 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수탁기관의 해지요청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건에 관한 의회보고

## 2. 근거법령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~ 제6조

## 3. 센터 현황

| 시설명      |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| 기초자치단체 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별사업 현장 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소일      | 2016. 3. 4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. 8. 18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 치      | 옥포읍 옥포로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원읍 비슬로520길 22-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요<br>업무 | -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<br>- 달성3색 도화사업 추진<br>-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지원 | -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<br>전반(사업조정, 주민교육,<br>주민협의체 관리 및 운영 등) |
| 운영방식     | 민간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탁기관     | 당초 : 대구 YMC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변경 : 달성군 사회적 경제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탁 기간    | 2021. 4. 1. ~ 2024. 3. 31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4. 추진 경위

- 2021. 1. : 민간위탁 해지 요청(대구 YMCA ⇨ 달성군)
- 2021. 1. ~ 2021. 2. :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
- ※ 신청기관 : 달성군 사회적경제협의회,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
- 2021. 3. 15. ~ 2021. 3. 17. :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
- ☞ 평가결과
  - 달성군 사회적경제협의회 : 87.6점 (선정)
  -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: 82.8점 (탈락)
- 2021. 3. 31.: 협약 체결(위탁기간 : 2021. 4. ~ 2024. 3.)

#### 5. 향후일정

- 2021. 4월중 : 협약서 공증 및 공보 게재
- 2024. 3. 까지 :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,  
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

## 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
## 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대상기관의 인력·기구 및 재정부담능력
2. 수탁대상기관의 시설·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
3.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4. 지역간 균형분포 등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**제6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**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“이라 한다) 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